

# 영토와 영유권 분쟁 그리고 독도

22431915 김은지

# 독도란 무엇인가

- 독도(獨島)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속하는 섬이다.
- 독도의 위치는 동해 중앙부,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7.4km 떨어져 있다.
- 독도는 동도(東島)와 서도(西島) 그리고 89개의 부속 암초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.
- 독도의 면적은 총 187,554m<sup>2</sup> (동도 약 73,297m<sup>2</sup>, 서도 약 88,740m<sup>2</sup>)로 이루어져 있다.
- 독도는 해양성 기후로 연중 강수량이 많고, 바람이 강하다는 기후환경을 지니고 있다.
-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 주권 상징이자, 동해의 전략적 요충지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땅이다.

# 독도의 지리적 위치



- 독도는 동경  $131^{\circ} 52'$ , 북위  $37^{\circ} 14'$ 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.
- 울릉도와 독도는 약 87km 거리, 독도와 일본 오키나와 거리는 약 157km로, 독도는 한국 땅이 분명하다.
- 독도는 한국 대륙붕의 동단에 위치하고, 독도 인근 해역은 동해의 중요한 어장과 해저자원 부존 지역이다.
- 동도는 높이 98.6m, 서도는 168.5m이다,

# 독도의 형성과 자연환경

- 독도는 약 460만~250만 년 전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섬이다.
- 현재는 침식이 심해 절벽이 발달하고 평지가 거의 없다.
- 동도와 서도는 해저 10m 이하 지점에서 연결된다.
- 독도에는 곰솔, 갯이밥, 섬기린초 등 특수한 식물군락이 분포하고 있다.
- 독도에는 또, 갯이갈매기, 습새 등 50여 종의 바닷새가 서식하고 있다.
- 독도는 1982년에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었다.



# 독도의 행정구역

- 독도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소속되어 있다.
-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로 울릉군 관할 명시를 하였다.
- 독도경비대(경찰)가 상주하며 독도 보호 및 치안 유지에 힘을 썼다.
- 독도에 처음으로 주민 등록한 사람은 2005년 김성도 씨 부부이다.
- 독도의 주요 시설은 독도 등대, 독도경비대 초소, 독도 방문객 대합실, 해양과학기지 등이 존재한다.

# 독도의 생태계

- 동식물 – 식물: 갯까치수염, 섬기린초, 해국 등 해안성 식물이 분포하였다.  
조류: 갯가리새 번식지로 세계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, 습새, 바다제비 등이 서식한다.
- 해양 생태계 – 조류(난류, 한류) 교차로 수산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다.  
독도 주변 해역은 명태, 오징어, 전복, 대게의 주요 서식지이다.
- 보호활동: 환경부 독도 생태계 조사 및 보호 관리 시행 중이다.



# 독도 관련 국제법 및 조약

- SCAPIN 제 677호 (1946): 일본 영토 목록에서 독도를 제외하였다.
-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(1951): 독도 명시적 언급이 없어서 해석 문제가 발생하였다.
- 대한민국은 독도에 경찰 배치를 하고 주민 거주, 시설 건립을 하여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.
-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지만 국제법 상 불리하다.

# 독도의 영유권 역사적 근거

- 삼국시대에는 512년 신라 이사부 장군, 우산국(울릉도, 독도)가 복속되어 있었다.
- 고려시대에는 <고려사>, 울릉도 . 독도가 고려 영토임을 기록되어 있었다.
- 조선시대에는 <세종실록지리지>, 독도(우산도)가 조선의 영토로 명시되어 있었다.
- 대한제국에는 칙령 제41호(1900년)로 공식 행정구역 편입하였다.

# 독도의 실효적 지배

- 1954년부터 대한민국은 경찰 독도경비대를 창설하고 독도 상주를 시작하였다.
- 1954년에 독도 등대 설치를 하고 지속적 시설을 확충하였다.
- 독도 주변에 어업, 과학조사 등 해역 관할권 행사를 하였다.
- 국제사회에서도 실효적 지배가 영유권 인정의 핵심요소로 평가된다.

#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반박

-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편입할 때 독도가 무주지, 즉 "무주지 선점" 이론을 주장한다.
- 일본 주장에 대한 반박
  - 당시 독도는 이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공식 편입된 상태였다.
  - 역사 기록상 독도는 일관되게 한국 영토이다.
  -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 요건 충족도 되지 않았다.
- 일본 학자들조차 에도시대 문서에서 "독도는 조선의 땅" 으로 기록했음을 인정하였다.

# 독도의 상징성과 의미

-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, 대한민국 영토 주권의 상징이다.
- "독도 수호" 는 역사, 국제법, 민족정신을 지키는 행위이다.
- 독도는 동해 영토 주권 확립, 해양자원 보호, 해양 안보의 요충지 역할을 한다.
- 독도 사랑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과 다름없다 생각한다.



# 독도 관련 지도 자료

- 18세기 서양 고지도에도 독도는 한국령으로 표시되었다.  
-예: 1735년 프랑스 지도, 1870년 일본 '태정관 지령' 이 있다.
- 조선시대 '팔도총도', '동국대지도' 등에도 독도 존재를 명시한다.
- 일본 태정관 지령 (1877): "울릉도 외에 일본과 관계 없다"라고 명시하였다.

# 대한제국 시기의 독도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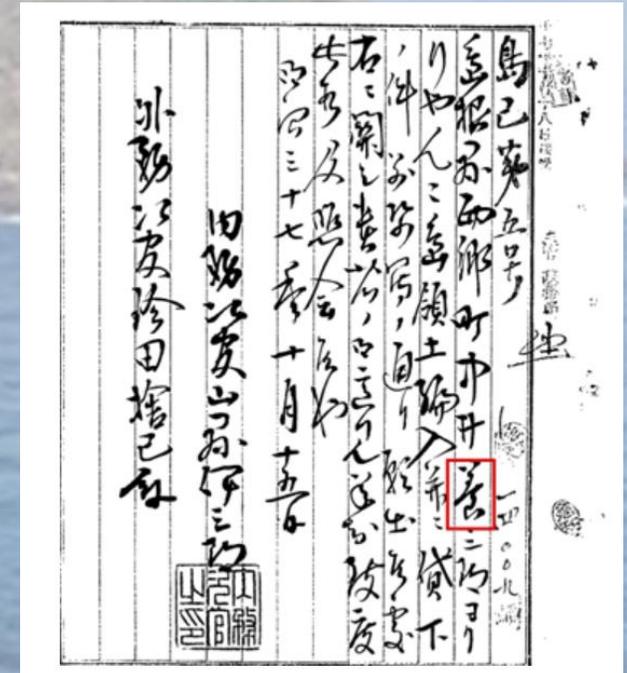
- 1900년: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공포하였다.  
- 울릉도를 '울도군'으로 개칭하고 독도 포함 명시하였다.
- 정부 문서 및 언론에서도 "독도는 한국 땅"으로 인식하였다.
- 러일전쟁 중 일본이 불법 편입(1905), 국제법 위반 사례가 생겼다.



칙령 제41호 문서

#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

- 1905년,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 일본령을 선언하였다.
- 일본 외무성은 비공개로 처리하여 국제사회는 몰랐다.
- 당시 대한제국은 을사늑약 직전으로 항의 불가 상황이었다.
- 국제법상 불법 편입이었고, 오늘날까지 한국과 분쟁이 초래된다.



시마네현 고시 문서

# 광복 이후의 독도 관리

- 1945년 광복 이후 한국은 독도 영유권 회복을 선언하였다.
- 1952년에는 '평화선' 이승만 라인으로 불리는 선을 독도를 포함해 선포하였다.
- 1954년에는 독도경비대를 창설하여 실효적 지배를 시작하였다.
- 이후 독도에 주민 거주 등 독도에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다.

일본해로 적혀있는 건 잘못된 표기->



# 국제사회의 시각

- 미국은 SCAPIN 문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였다.
- 국제 사회 대다수는 한국의 실효 지배를 인정하고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.
- UN은 영유권 분쟁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.

# 독도 관련 교육과 홍보

- 초, 중, 고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을 강화하여 추가하였다.
- 국립해양박물관, 독도체험관 등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.
- '독도의 날'(10월 25일) 제정하고,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.
- 독도 관련 다큐, 애니메이션, 뮤지컬 등도 제작하고 있다.



# 독도에 거주하는 사람들

- 김성도, 김신열 부부는 독도 유일한 주민으로 거주하였다.
- 2005년부터 '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-96'으로 주소지가 등록되었다.
- 경비대와 해양경찰, 공무원도 상주 근무하고 있다.
- 독도 주민의 생활은 상징적 영토 주권 행사를 하였다.



독도에 거주하셨던 김성도씨이다.

# 독도의 경제적 가치

- 오징어, 전복, 대게 등 풍족한 어족 자원으로 수산업이 활발하다.
-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, 희토류 등 해저자원이 있어 가능성이 존재한다.
- 독도에는 연 20만명 이상 방문하고, 해양 생태 체험 인기로 관광의 가치로도 높다.
- 독도는 해양과학, 기상관측, 해저지질 연구 중심지로 연구 가치도 높다.

# 독도와 해양 주권

- 배타적 경제수역(EEZ) 기준으로 독도는 동해상 주권 기준점이 된다.
- 독도 기준으로 해양 경계를 확립하여, 수산권과 자원권이 확정되었다.
- 일본은 독도 인정을 거부하고, 해양 경계 협상을 지연 중이다.
- 독도를 지키는 건 해양권익과 직결된다.

# 일본의 도발 사례

- 일본은 매년 2월 22일에 '다케시마의 날'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.
- 일본 교과서에는 "다케시마는 일본 땅"을 명시하고 있다.
- 또, 일본은 관료.국회의원 독도 관련 망언을 반복하고 있다.
- 한국 외교부 항의와 시민단체 시위를 지속하였고, 지속하고 있다.

#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 수호 노력

- 외교부는 '독도 영유권 TF'를 운영하고, 국제사회 대응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.
- 독도 관련 자료를 다국어 번역 및 해외 홍보를 하고 있다.
- 국내 외 언론 대응을 하고, UN 등 국제회의에서 입장을 표명하였다.
- 국방부도 독도 주변 항공, 해상 방위 작전을 강화하였다.



독도 비행 훈련

# 독도 관련 법제화 현황

- <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> (2008년 제정)
  - 목적은 생태보호, 문화재 보존 등 종합 관리를 위해 제정되었다.
- <해양수산발전기본법>에 독도 해양영토를 명시하였다.

# 독도에 대한 국제 소송 가능성

-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(ICJ) 제소를 주장하였으나, 한국은 거부하였다.
- 대한민국은 실효적 지배 원칙에 따라 제소를 응하지 않았다.
- 영유권 분쟁은 한쪽 국가 동의 없이는 재판이 불가능하여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은 성립되지 않는다.
- 국제법 상 한국의 주장이 우세하다는 평이 많다.

# 독도 관련 문화 콘텐츠

- 영화: <미안하다 독도야>, 다큐<KBS 독도 프로젝트> 등이 있다.
- 애니메이션: '독도는 우리 땅' 뮤직비디오 등이 있다.
- 예술: 독도 사진전, 캘리그래피, 회화 전시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.
- 국민적 참여 캠페인: 독도 플래시몹, SNS 릴레이 등이 있다.



독도 그림 엽서

# 독도를 다룬 교과서와 교육자료

- 초중교 교과서: 독도 관련 항목이 필수로 수록되어 있다.
- 교육부: '독도 바로 알기' 자료집과 영상 자료를 배포하였다.
- 체험학습: 독도 방문 프로그램과 울릉도 연계 탐방을 진행하고 있다.
- 대학 및 공공기관의 독도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.

# 독도와 청소년의 역할

- 청소년 독도 동아리, SNS 홍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.
- 전국 독도 글쓰기 . UCC 공모전 등 참여 기회가 다양하다.
- '청소년 독도지킴이 위촉'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.
- 미래 세대의 독도 인식 확산에 중요한 열쇠로 평가되고 있다.

#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 대응

- 한국은 시민단체 '반크', '독도사랑운동본부' 활동이 활발하다.
- 일본은 독도 문제를 비판하는 지식인과 언론도 존재한다.
- 양국 평화적 해법을 위한 민간 외교 노력이 중요하다.
- 험한보다 상호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여론도 확산되었다.



반크 활동 사진

# 독도의 미래 가치

- 지질학으로 독도는 과거 동해 형성사 연구의 핵심이다.
- 해양과학으로는 기후 변화 감시, 해양 생물 다양성 분석을 할 수 있다.
- 관광으로는 친환경 독도 탐방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.
- 독도는 단지 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이다.

# 결론: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.

- 독도는 역사적, 지리적,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다.
- 실효적 지배와 국민적 관심으로 굳건한 수호가 가능하다.
- 독도는 우리의 정체성과 주권, 그리고 미래의 상징이다.
- "우리가 지켜야 할, 지켜내고 있는 땅, 독도 "



# 참고 및 인용 출처

- 대한민국 외교부 『독도는 우리 땅』 공식 홈페이지  
(<https://dokdo.mofa.go.kr>)
- 국립해양박물관 『독도 자료실』
- 국토지리정보원 『독도 지명자료집』
- 교육부 『독도 바로알기』 교재 및 영상 콘텐츠
- 독도박물관 및 독도체험관 공식 자료
- 동북아역사재단 『독도 영유권 관련 고문서·지도 자료집』
- 조선시대 『팔도총도』, 대한제국 칙령 제41호(1900)
- 일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(1905), 태정관 지령(1877)
- KBS 다큐멘터리 『독도 프로젝트』, 영화 <미안하다 독도야>
- UN 및 국제사법재판소(ICJ) 관련 문서 발취
- 통계청 및 해양수산부 제공 어업·자원 관련 자료
- 반크(VANK), 독도사랑운동본부 활동 자료